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74호)

2024. 7.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괄적검토	4
(1)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4
(2) 제정안의 구성	4
(3) 지역 의과대학 법안 발의 현황	5
2. 의과대학 설치 · 타법 우선 적용	6
3. 입학정원 범위 설정	8
4.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	9
(1) 예산지원의 특례	9
(2) 지원기금의 조성	12
(3)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13

(4)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14
※ 참고자료	16
1. 의과대학 설립 관련 규정	16
2. 4대 교육 여건 산정 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18
3.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및 입학 정원	19
4.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	2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3.
3. 회부연월일 : 2024. 6.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은 2022년 기준, 각각 66.1%와 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특히,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집적해 있는 전라남도 동부권의 경우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상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가 0.72‰로 전국 평균인 0.43‰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인명사고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함에도 2023년 전라남도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 비해 부족하며, 정부가 추산한 2035년까지의 부족한 의사 인원 전체 10,000명 중 전라남도에서만 99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

록 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국립순천대학교 대학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을 확대하며,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 인프라 취약지인 전라남도 지역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3조).

라. 국가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하여 국가의

경비지원과 전라남도의 기금 설치, 물품양여, 토지 사용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등).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의과대학의 정원을 100명 내외로 하며,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예산지원의 특례, 지원기금의 조성,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하여 전라남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라남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의료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제정안의 구성

제정안은 본칙 9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됨.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 본칙(9개 조문)	
제1조(목적)	제6조(지원기금의 조성)
제2조(설치)	제7조(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3조(입학정원)	제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제5조(예산지원의 특례)	
☐ 부칙(1개 조문)	
시행일	

(3) 지역 의과대학 법안 발의 현황

지난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지역 의과대학 특별법안은 총 8건으로 다음과 같음.

< 21대국회 지역 의과대학 특별법안 >

의안번호	법안명	대표발의의원
2102624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윤 의원
211557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
2116729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소병철 의원
2117015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성일중 의원
2118300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김희재 의원
2123732	경상남도 내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최형두 의원
2124533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최영희 의원
2125447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최혜영 의원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제정안 외에도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¹⁾,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²⁾이 상정되어 있음.

참고로 지난 3월 14일 전라남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어느 대학에 할지 전남도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면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7월 2일 전라남도청은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1) 의안번호 제2200279호,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2) 의안번호 제2201062호,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주관할 용역기관을 선정, 계약하였음.

2. 의과대학 설치·타법 우선 적용(안 제2조 및 제4조)

제정안은 국립순천대학교를 특정하여 의과대학의 설치와 입학정원 산정 등에 대해 규정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제2조(설치) ① 「고등교육법」 제18조, 제19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립순천대학교(이하 “국립순천대학교”라 한다)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

②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은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와 입학정원의 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입학자격·수업연한·교육과정·학위의 수여와 그 밖에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법에 따를 때, 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나³⁾,

3)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4조(교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추어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추어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현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것.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

의과대학의 경우 「의료법」 4)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수준으로 정원제한을 받음.

법 제정이 되는 경우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과대학을 설립한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과는 달리 특별법으로 의과대학을 설치하게 되고, 순천대학교 의과대학만에 특별히 적용되는 정원 등의 규정을 두게 됨.

교육부는 특정 대학의 의과대학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제정은 특별법의 취지나 대학 간 형평에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지역, 공공, 필수분야 의사부족과 인력 확충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대학 중심으로 확대했으며,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특정대학 및 입학정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기존 법률 및 규정에서 의대 설립 요건·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의대 설립

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추는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4) 「의료법」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법 체계상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충북대 의과대학은 전남-광주 지역에는 전남대 의대와 병원, 조선대 의대와 병원이 있어 인구수 대비 의대 정원이 결코 타 지자체에 비해 낮지 않으며, 국가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수천억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인구 수 3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에서 병원 설립시 적자 경영이 불가피하고, 지역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입장임.

울산대 의과대학은 제정안이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합의문 1항에 제시된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항목에 반하며, 또한 3항의 대한의사협회가 문제 제기한 4대 정책 (의대 정원, 공공의대 신설 포함)의 협의체 논의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임.

3. 입학정원 범위 설정(안 제3조)

제정안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을 100명 내외의 범위로 하여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3조(입학정원) 교육부장관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정안에 따를 때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법으로 확보함으로써 전

라남도 지역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2024년 3월 20일,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이미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각 의과대학에 정원이 배정되었음.⁵⁾ 따라서 별도의 법률을 통해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의과대학의 정원을 더 많이 증가시킬 것으로 보임.

4.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안 제5조부터 제9조)

(1) 예산지원의 특례(안 제5조)

제정안은 국가가 국립순천대학교의 시설·설비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5조(예산지원의 특례) ① 국가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설비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 지원 및 내용,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에 대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지원 근거

5) 참고자료 4.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및 모집인원 현황

규정을 두고 있으나⁶⁾, 제정안은 지원대상을 특정하여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음.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의동, 부속병원 등 건물이 필요하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은 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⁷⁾, 설립비용 외에도 운영비·연구비 등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지원규정은 상당한 재정 소요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다른 의과대학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의과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의과대학의 신·증설 가능성, 설립 주체(국립, 사립) 및 설치 후보 지역·대학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이 통보된 이후 검토 가능한 사항이며, 특정지역 국립의과대학 설치를 전제로 하는 법률조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특정 학교·지자체에 한정하는 재정지원(시설 및 설비 조성, 운영, 학비 지원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수용 곤란하며, 국립대학(의대 포함)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국

6)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 별로 설립한다.

②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分院(分院)을 둘 수 있다.

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을 통해 시설확충비, 보수비 등을 지원 중이며,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등록금 등 지원 중이라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의대 신설의 경우 대상 지역뿐 아니라 추가로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건립 재원, 교원 확보 등에 관한 기재부, 교육부 등 유관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른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건립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실시되고, 2029년부터 신입생이 입학하고 2034년에 의과대학 정원(600명)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을 전제할 때,

의과대학 설립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940억 6,400만원, 부속병원 설립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851억 6,800만원, 의과대학 운영에 2029년부터 2034년까지 756억 1,500만원이 소요되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비용은 2,548억 4,8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4년 >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합 계
의과대학 설립	3,778	44,371	45,916	-	-	-	-	-	-	94,064
부속병원 설립	2,293	27,562	55,314	-	-	-	-	-	-	85,168
의과대학 운영	-	-	-	8,805	10,499	12,378	12,519	14,687	16,727	75,615
계	6,070	71,932	101,230	8,805	10,499	12,378	12,519	14,687	16,727	254,848

주: 1) 실제 공사 기간과 신입생 입학 연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연도는 변경될 수 있음
 2) 건물 건립 비용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녹색건축물인증 비용 등이 제외된 금액이며, 해당 금액을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3) 부속병원 건립 비용은 국고지원율 25%만을 반영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4) 의과대학 운영 비용의 경우 실제 교직원 채용형태와 채용규모 등에 따라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5) 의과대학 기숙사가 건립·운영될 경우 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원기금의 조성(안 제8조)

제정안은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8조(지원기금의 조성) ① 전라남도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기금의 조성은 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그러나 제정안은 지원기금에 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한 세액 공제규정을 두고 있을 뿐, 조성된 기금의 구체적 용도 및 운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나, 위임규정이 부재함. 따라서 기금 조성을 규정한다 법의 체계를 참고했을 때, 용도에 대한 규정을 하거나 혹은 용도에 대한 위임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안 제8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함.

제7조(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양여는 소유권을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이
전해주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예외적
인 경우⁸⁾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공유재산은 유상매각
이 원칙인 점,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 양여 특례를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¹⁰⁾에 따라 국가에게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가 가능하므로, 본 제정안에 별도의 특례를 두
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4)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안 제9조)

제정안은 국립순천대학교의 장은 의과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
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
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
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
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9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의과대학이 설치된 국립순천대학교 (이하 “도내 국립대학교”라 한다)의 장은 의과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는 국립순천대학교가 공공기관인 바,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국립대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인만큼, 승인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유사한 사례인 서울대학교¹¹⁾ 및 인천대학교¹²⁾의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에서도 그 승인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88

- 1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1. 의과대학 설립 관련 규정

□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함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교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현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것.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추는 것

<참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가. 병상 규모 : 허가 병상 수 100병상 이상

나. 연간 진료실적 : 퇴원환자 2,000명 이상

다. 병상 이용률 : 실제 운영 병상 수를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 이용

라. 시설 및 기구 : 간호과, 영양과, 약국, 의무기록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중앙공급실, 인턴당직시설, 분만실, 회복실 및 강의실(또는 회의실)을 갖추는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참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이상 8개과)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별로 설립한다.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2. 4대 교육 여건 산정 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 교사(교사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 기준면적 [제4조제3항 관련]

계 열 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기준면적(m ²)	12	17	20	19	20

※ 전문대학은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교지 기준면적 [제5조제1항 관련]

학생 정원 (편제정원)	400명 이하	400명 초과~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면적(m ²)	교사건축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 교원 산출기준 [제6조제1항 관련]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1인당 학생수(명)	25	20	20	20	8

□ 수익용 기본재산 [제7조제1항 관련]

- 대학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 제외) 300억원
2. 전문대학 200억원
3. 대학원 100억원

3.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및 입학 정원

시도명	인구 천명당 의사수(2021)	학교수	정원	학교명(의예과 기준)
계	213(평균) (OECD 평균 3.6명)	40	3,058	
서울	3.37	8	826	서울대(135), 경희대(110), 고려대(106), 연세대(110) 중앙대(86), 이화여대(76), 한양대(110), 가톨릭대(93)
부산	2.45	4	343	부산대(125), 고신대(76), 인제대(93), 동아대(49)
대구	2.55	4	302	경북대(110), 계명대(76), 영남대(76), 대구가톨릭대(40)
인천	1.77	2	89	인하대(49), 가천대(40)
광주	2.54	2	250	전남대(125), 조선대(125)
대전	2.56	2	150	충남대(110), 을지의대(40)
울산	1.60	1	40	울산대(40)
경기	1.68	3	120	아주대(40), CHA의과대*(40), 성균관대(40)
강원	1.81	4	267	강원대(49), 한림대(76), 가톨릭관동대(49), 연세대원주(93)
충북	1.57	2	89	충북대(49), 건국대충주*(40)
충남	1.54	3	182	단국대천안(40), 순천향대(93), 건양대(49)
전북	2.06	2	235	전북대(142), 원광대(93)
전남	1.75	-	-	-
경북	1.38	1	49	동국대경주(49)
경남	1.71	1	76	경상대(76)
제주	1.77	1	40	제주대(40)
세종	1.23	-	-	-

4.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및 모집인원 현황

지역	대학명	2024학년도 정원	배정	2025학년도		
				정원 (A)	모집인원 (정원내) (B)	차이 (B-A)
수도권	서울	서울대		135	134	△1*
		경희대		110	110	0
		연세대		110	110	0
		한양대		110	110	0
		고려대		106	106	0
		가톨릭대		93	93	0
		중앙대		86	85	△1*
		이화여대		76	76	0
	서울	826	0	826	824	△2
	경기	성균관대	80	120	110	△10
		아주대	80	120	110	△10
		차의과대	40	80	80	0
	인천	인하대	71	120	120	0
		가천대	90	130	130	0
	경기·인천	209	361	570	550	△20
	수도권 소계	1,035	361	1,396	1,374	△22
비수도권	강원	강원대	83	132	91	△41
		연세대 분교	7	100	100	0
		한림대	24	100	100	0
		가톨릭관동대	51	100	100	0
	경북	동국대 분교	71	120	120	0
	대구	경북대	90	200	155	△45
		계명대	44	120	120	0
		영남대	44	120	100	△20
		대구가톨릭대	40	80	80	0
	경남	경상국립대	124	200	138	△62
	부산	부산대	75	200	163	△37
		인제대	7	100	100	0
		고신대	24	100	100	0
		동아대	51	100	100	0
	울산	울산대	80	120	110	△10
	전북	전북대	58	200	171	△29
		원광대	57	150	150	0
	광주	전남대	75	200	163	△37
		조선대	25	150	150	0
	제주	제주대	60	100	70	△30
	충남	순천향대	57	150	150	0
		단국대(천안)	80	120	80	△40
	충북	충북대	151	200	125	△75
		건국대 분교	60	100	100	0
	대전	충남대	90	200	155	△45
		건양대	51	100	100	0
		을지대	60	100	100	0
	비수도권 소계	2,023	1,639	3,662	3,191	△471
	합계	3,058	2,000	5,058	4,565	△493